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·위탁에 관한 고시

◇ 제·개정 이유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757호, 2023. 10. 24. 제정, 2024. 10. 25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4954호, 2024. 10. 22. 제정, 2024. 10. 25. 시행)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지정 고시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
- 나. 기상청장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